

4.1.28 전임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지원규정

제정	2006. 11. 24.
개정	2007. 05. 29.
개정	2010. 04. 13.
개정	2012. 09. 26.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8. 11.
개정	2017. 02. 22.
전부개정	2018. 02. 27.
개정	2020. 02. 05.
개정	2022. 04. 04.
개정	2023. 03.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당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보조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초당대학교 연구보조비 지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연구 지원비 지원의 범위) 전임교원 연구보조비 지원은 연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임교원에게 [별표 1] 과 같이 지원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전년도 교육, 연구 및 봉사실적을 교원업적평가규정 (이하 “교원업적평가” 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단,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03.01.>

② 연구보조비는 전항의 실적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부총장은 연구보조비 평균액을 지원한다.
2. 연구보조비 지원일 현재 휴직중이거나 연구보조비 지원일 이전에 퇴직한 교원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평가대상기간이 상이한 교원의 지원방법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 2020.02.05., 2022.04.04.>
4. 교원업적평가년도에 트랙전환된 교원의 경우 3월 트랙전환된 교원은 전환된 트랙으로, 9월 트랙전환된 교원의 경우 트랙전환 전의 트랙으로 지원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및 학술활동비 지원지침”에 의거 연구비 지원 신청서, 연구계획서 및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보조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구 지원비 지원액의 산정) ① 교원의 연구 지원비 지원액의 산정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원업적평가 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교원업적평가를 기준으로 담당부서의 확인이 완료된 업적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②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점수산정은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에 의거 교육, 연구, 봉사영역(특별점수)의 합으로 하며 각 영역 점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교원업적평가 세 영역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본교 장기근무자, 봉사실적, 연구실적, 교육실적 순으로 평가 순위를 정한다.

제7조(기타) ①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또는 “연구 및 학술활동비 지원 지침”의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 (2006년도 전임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년 4월 전임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부칙개정) 부칙 제342호의 제2호(경과조치)는 폐지한다.
3. (트랙구분) 제5조제1항의 교원업적평가의 평가 트랙은 연구중심, 봉사중심, 비정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도 전임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3년도 교원업적평가 이후 적용한다.

〈별표 1〉 교원업적평가 총점 순위에 따른 연구보조비 지원 금액

등급	업적평가 총점 순위	지원 금액
S	상위 0%~10% 미만	200%
A	10% 이상~40% 미만	120%
B	40% 이상~90% 미만	80%
C	90% 이상	40%

* 당해연도 연구보조비 평균액은 (연구보조비 총예산 금액)/(당해연도 업적평가 대상 교원 수)의 값을 지급률 100%로 한다.